

금융위원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일반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회계 및 결산 담당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1명	행정인사과	임용일로부터 2년

* 정부서울청사 소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직급(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5호) (회계 및 결산 담당)	1명	- 금융위 소관 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결산 관련 감사원 및 국회 대응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 6. 8.)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2020. 9. 22.)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 10. 21.)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 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 ·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 자격요건

직급 (분야)	응시 자격요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회계 및 결산 담당)	자격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 시,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이 유효하여야 함☞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결산, 회계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

<우대요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경력(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을 유의

▪ 정보화 관련 아래의 자격증

-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 2012.1.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 종목, 등급별로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되 동일 종목 자격증 중 등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등급이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
(예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여 개인 수상 및 공동수상 모두 지원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 ☞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결산, 회계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

<공통>

- 한 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두 개 이상 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 응시 불인정
- 경력, 우대요건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임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1. 27.**)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2. 1. 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83,059천 원	47,209천 원

- ※ 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분야별로 응시인원이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30분 내외)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및 심사항목 >

평정요소	심사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직 사명감, 청렴성, 적극성, 봉사정신 등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 정책현안 및 이슈 분석력 등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문제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 정확성, 논리전개 타당성 ○ 문제해결능력 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책임감 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가치기준 ○ 임용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i)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ii)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1.12.28.(화)~'22.1.7.(금)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2.1.4.(화)~'22.1.7.(금)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1.20.(목)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장소·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면접시험	'22.1.27.(목)	◦ 금융위원회(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2.2.10.(목)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1. 4.(화) ~ 2022. 1. 7.(금)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다. 접수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채용 담당자 앞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 전 화 : (02)2100-2754,2755, FAX : (02)2100-2759

라. 접수방법 : 등기송부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만 실시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증”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9. 제출서류

- * 하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구 분	내 용
※ 아래 사항은 필수 제출자료임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임기제 5호 지원시)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상의 경력, 학위, 업무실적,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위 증명서, 실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양식 없으며 A4 5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기술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지원자 사전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아래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공인회계사 자격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이 유효하여야 함
8. 경력(재직) 증명서 등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일)·부서·직위(급)·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의 경우,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부서, 직위(급),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여부 기재)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통상적인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근무기간, 부서, 직위(급),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발급시스템 등의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별지서식 제6호(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기간, 직위(급), 부서, 근무형태, 담당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근로악정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
9.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여받은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10.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원본 제출이 어려운 서류 등의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scsong2873@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3. 1. ~ '22. 3. 3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특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4,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분야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회계 및 결산 담당

주요업무	· 금융위 소관 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결산 관련 감사원 및 국회 대응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전문성, 상황인식/판단력, 분석력, 추진력, 의사소통/조정능력

필요지식	○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
	○ 회계업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회계 및 결산	
	자격증	내용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 시,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이 유효하여야 함 <p>☞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결산, 회계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p>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정보화 관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수상 및 공동수상 모두 지원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별지 2호]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5호)-회계 및 결산 담당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5호)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응시요건		(한자)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1만원)

응 시 표 (금융위원회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 응시번호	응시요건	
성명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응시분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5호, 회계 및 결산) 기재
- ② 응시요건 : 기재하지 않아도 됨
- ③ 성명 : 한글 및 한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 ④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한다.
- ⑤ 주소 :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⑥ 10,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에서 구입
 -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 3호]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 회계 및 결산 담당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김정자 기재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성명	

나. 응시자격(해당자만 작성)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회계사 등록일)			자격검증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XXX	' 01. 1. 1. ~ ' 03. 2. 5.	팀장	상세히 작성	상근/비상근/ 시간제
	,	.	.		
	.	.	.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에 해당하는 우대요건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XXX	' 03. 2. 6. ~ ' 18. 2. 5.	팀장	상세히 작성	상근/비상근/ 시간제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수상실적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연월일
	표창장 (○○○)		XX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 및 수상실적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작성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과 분야 기재
(ex.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5호, 회계 및 결산))

3.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공고문상 자격증 기재

※ 응시자격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4. 응시자격(자격증)

- ① 자격증명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 ② 취득일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 취득일을 기재
- ③ 자격검증기관 : 공인회계사(금융위원회)

5.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경력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격증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수상실적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수상실적 기재)
- ② 최근 실적부터 기재
- ③ 수상내용 또는 공적내용이 수상실적 증빙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A4용지 2매 내외로 컴퓨터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 휴면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인)

직무수행계획서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A4용지 5매 내외로 컴퓨터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 휴면명조체 13 Point로 작성
-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인)

[별지 6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재직) 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부서까지 기재)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연.월.일)	까지 (연.월.일)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p>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2021 년 월 일</p> <p>증명기관명 :</p> <p>주소 :</p> <p>전화번호 :</p> <p>사업자등록번호 :</p> <p>대표자 : (인)</p>															
<table border="1"><tr><td colspan="2">발급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 (4)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특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타공무원 시험 실시기관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 .

성명

(서명)

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9호]

지원자 사전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여부 및 비고
1. 채용직급 확인 여부	O / X
2. 계약기간 확인 여부	O / X
3. 근무예정지 확인 여부	O / X
4. 채용 자격 요건(공통요건) 준수 여부	O / X
5. 채용 자격 요건(학력, 경력) 준수 여부	O / X 비고 :
6. 보수 수준 확인 여부	O / X 비고 :
7. 징계 여부(말소기록 포함, 있을 시 징계종류, 사유, 처분일자 명시)	O / X 비고 :
본인은 이번 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자 사전체크리스트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실 관계에 대해 빠짐없이 기재하였음. 이와 상이한 내용이 확인될 시 임용 이후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함.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10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